



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9
제정일자	1999.07.01
개정일자	2013.05.01
개정번호	Ver .8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칙 제59조에 의거 동양미래대학교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심의하며 각 단위 사업의 총괄 조정을 위해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정보화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처장, 기획부처장, 동양미디어 주간교수 등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정보지원실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 임용 기간과 같다.

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한다.

③ 간사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·장소 및 출석위원의 성명
2. 토론·심의내용 및 의결내용의 요지

제5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부의하며 심의·자문한다.

1. 대학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
2. 교육, 연구, 산학, 행정 등 대학 업무 제반 분야의 중요 정보화 추진 업무 관련 결정 사항
3. 대학 내 정보 기술 및 설비의 투자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대학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제 규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
5.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대외협력 및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7조(규칙의 제정 및 개정) ①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②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은 규칙 제6조에 따른다.

제8조(경비)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경비를 대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기 시행된 대학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(1998년 10월 정보화추진팀 사항)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